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- 지역경제과

(2011. 3. 2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2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2011년 2월 22일

4. 근거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42조(2011. 1. 1 법률 제10219호)

나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

(2010. 1. 1 대통령령 제22024호)

다.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(2009. 3. 27 대통령령 제9184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신용보증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없이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사전심사만으로 추천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기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출된 것임

[주요내용]

(1) 안 제3조의2에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

(2) 안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보증추천대상자에 한해 심의회 의결없이 신용보증서 발급기관의 사전심사만으로 추천서를 발급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회 심의 항목 중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 항목을 삭제

(3) 안 제11조의2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공고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용자계획의 공고 조항을 신설

(4)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

[검토의견]

○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경영인들이 필요한 때 적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식적인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상위법에 맞게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3조(기금의 존속기한)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제2항(정부의 책무) 등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